

SmartWhistle

윤리경영 Newsletter 2018년 7월호

1. 최근 동향 및 소식

- 공직자 '갑질행위' 금지 규정 더 촘촘해진다
- '공직자 소극적 업무처리·근무태만·불친절'도 국민은 부패행위로 인식해
- 공익신고, 불법 바로잡는 국민의 '호루라기'로 자리매김 해
- 국민권익위, 인도네시아·베트남과 반부패 협력 강화한다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미즈노] 윤리규범의 책정

3. 청렴 위반 사례

- 공정률을 부풀려 상사에게 허위 보고
- 채용 관련 이해관계직무임에도 회피 논의 없이 처리

4. 지식마당

- G20 반부패행동계획 2017~2018

5. Quiz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최근 동향 및 소식

1. 공직자 ‘갑질행위’ 금지 규정 더 촘촘해진다

앞으로 공직자가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편의 및 특혜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면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령상 부패행위와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패행위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을 더욱 촘촘하게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접수된 부패신고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아 소관기관으로 안내·송부 또는 자체 종결한 3,239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현행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폭언·욕설·과도한 업무부과 등 갑질행위’(89건)나 ‘근무태만·불친절 등 복무의무 위반’(405건)도 국민들은 부패로 인식해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이 변화된 국민의 청렴의식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의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기간 제출된 민원이나 신고 중 법령상 부패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이송·종결하던 사건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건으로 접수·처리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보다 촘촘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월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추구, 민간에 대한 부정할 알선·청탁 및 사적노무 요구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행동기준 9개 항목을 추가했다

<http://www.gosiweek.com/7212>

2. ‘공직자 소극적 업무처리·근무태만·불친절’도 국민은 부패행위로 인식해

법률상 부패행위가 아닌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처리·근무태만·불친절에 대해 국민들이 이를 부패로 신고하는 등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접수된 부패신고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하는 부패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아 소관기관으로 안내·송부하거나 자체 종결*한 3,239건을 대상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국민인식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부패신고 중 ▲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 진정성 민원 등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 ▲ 감사원이 이미 감사했거나 수사·재판의 옳고 그름에 관한 사항 ▲ 언론매체에 의해 이미 공개된 사항 등에 해당할 경우, 감독·수사 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소관 기관으로 송부하거나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관 기관으로 송부하거나 자체 종결한 부패신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절차·결과에 대한 불만 또는 진정성 민원이 29%(93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단순 의혹 제기와 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행위 등이 각각 15.4%(500건), 근무태만 등 복무 관련 신고가 12.5%(405건), 수사·재판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11.1%(360건)로 나타났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2580>

최근 동향 및 소식

3. 공익신고, 불법 바로잡는 국민의 '호루라기'로 자리매김 해

(공익신고 현황) 접수 1,683,709건, 처리 1,690,394건*, 행정처분 44.5%

(전년대비 신고 증감) 2016년(1,516,702건)대비 1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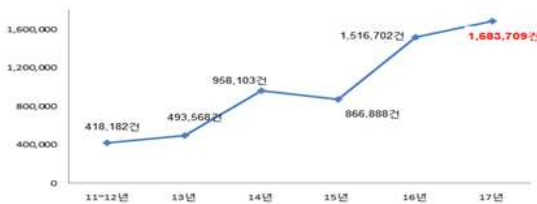
(분야별) 안전(80.3%), 소비자이익(14.6%), 건강(2.6%) 분야 순

(법률별) 「도로교통법」(77.3%), 「장애인등편의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순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11%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제도가 우리사회의 불법을 바로잡는 국민의 '호루라기'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62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11% 증가한 1,683,709건이 접수돼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접수 공익신고 추이>

2011년 도입 이후 증가하던 공익신고는 보상금 목적의 전문신고인(일명 파파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건수를 제한한 이후 2015년도에는 감소했다. 하지만 2016년 1월, 2018년 5월 두 차례의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건축법이 추가되는 등 신고대상 법률이 대폭 확대(최초 180개 → 현재 284개) 됨에 따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935>

4. 국민권익위, 인도네시아-베트남과 반부패 협력 강화한다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제도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와 2006년에 체결한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MOU)’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6일에는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베트남 감찰원장, 중앙내무위원장 등에게 반부패 정책 자문을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국민권익위 이건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아구스 라하르조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장은 현지시간 4일 오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청사에서 2006년에 체결한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MOU)를 3년간 연장한다.

올해로 12주년을 맞는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2006년 12월 4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체결했다.

이번에 연장하는 양해 각서를 통해 양국은 향후 3년간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 정책·경험·우수사례 공유, 기술지원, 공동연구, 교육훈련, 양자 심포지엄 개최 등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인도네시아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초청연수, 반부패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인도네시아에 전수된 ‘청렴도측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615>

윤리경영 실천 사례

[미즈노] 윤리규범의 책정

1. 일본

기업윤리 실천에의 대응 부족

일본 기업은 지금까지 경영을 할 때 이익제일주의를 언급하고, 효율 향상 등에 힘을 쏟아 왔다. 반면에 인권의 존중이나 사회와의 관계가 깊은 인간성이나 사회성에는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

다라서 경영이 급속하게 글로벌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개인 및 조직의 쌍방 모두 인간적인 규율·규범을 상실하여, ‘윤리관의 결여’, ‘윤리관의 상실 증후군’ 이 기업 내에 넓게 퍼지게 된 것이다.

이에 잇따른 기업 불상사의 발각에 수반하여 각 방면에서 기업 윤리의 확립이 큰 목소리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기업은 윤리강령도 없고, 기업윤리 실천의 방법도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업의 현장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당혹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속하게 대응체제 정비

이와 같은 상황을 우려하여 유력 기업을 발기인으로 하여 1997년 11월 ‘경영윤리 실천연구센터’가 설립되었는데, 이미 1998년 1월에 기관지 ‘경영윤리’의 창간호를 발간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경영윤리 관계의 자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성원을 보면 일본을 대표하는 유력 기업의 회장·사장이 중심인데, 각 사에서는 곧 기업 윤리담당 임원·책임자를 임명하고 ‘경영윤리 담당 책임자 회의’를 발족시키는 한편, 기업에 공통된 과제에 대한 정보교류를 시작하였다. 또한 윤리강령(기업행동 지침, 행동 규범 등)을 제정하거나 경영이념을 개정하여 기업윤리의 실천에 전사적으로 전념하고 있다.

2. 배경

스포츠용품 최대 규모의 미즈노(Mizuno)는 1991년 10월에 ‘윤리규범’을 책정하였다. 책정의 계기는 1991년 8월, 동사가 대기업 증권회사에서 손실 보전

을 받고 있던것이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데 있었다.

현재는 보전의 경우 1991년 10월에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손실 보전을 한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보전을 구한 고객에 대해서도 형사벌이 부과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불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게다가 손실 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매우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장의 직접 진두 지휘 아래 기업윤리의 확립을 지향하고 임원회에서 ‘윤리규범’을 책정한 후 사내에 교부하였던 것이다.

3. 윤리강령의 내용

이미 창업자가 정한 10개 항목의 행동규범이 있었는데,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반부패 행동계획 주요 내용	
1	선물, 향응은 받지 않을 것
2	사원간에 선물을 하지 않을 것
3	술접대로 판매하는 방법은 하지 않을 것
4	사원간의 자택방문 금지
5	휴일 이외의 골프 금지
6	음주자의 자동차 구입 금지
7	음주자가 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전용의 운전기사를 고용할 것
8	타사, 타인의 보증을 하지 않을 것
9	회사 관계사와의 거래시에는 회사에 신고할 것
10	사원간의 신임, 송별회 등을 회사 이외의 금지할 것

현대에 조화되지 않고 있는 6번, 7번 항목과 필요 이상으로 구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해석되고 있는 4번, 10번 항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0가지 규칙의 정신은 지금도 계속 계승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원 개인에 의한 물품의 횡령, 착복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업자로부터 자택에 보내진 증정품은 많고 적음, 가격에 관계없이 모두 회사에 갖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윤리경영 실천 사례

받은 물품은 각자가 총무본부에 나가서 '증정품수령 보고서'에 기입하고, 총무본부에서 관리하며, 처리가 결정된다. 쌀 및 사과와 같은 식품이라면 사원식당 또는 독신자 기숙사의 주방에서 조리되어 가능한 많은 사원에게 공정하게 골고루 미치도록 한다. 또한 식품 이외의 증정품은 총무본부가 관리하고 사내이벤트(event) 때 경품으로서 사용하게 된다.

그 밖에도 사원간의 연말, 추석 때 주고받음은 전혀 없고, 영업활동영 있어서도 요정 및 고급요리점에서 밀실거래는 금지되며, 상품 전시회 등을 통한 공개적인 거래가 원칙으로 되어 있다.

또, 골프용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휴일 이외에 사적 용무의 골프를 하는 경우는 사장의 결재를 요할 정도로 철저하였다. 이와 같이 미즈노는 자사 제품에 관한 정실이 얽힌 상거래는 일체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실거래 및 부정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10가지 규칙을 준수하는 풍토가 잘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윤리규범'을 책정하던 때에도 종업원간에 특별한 저항없이 받아들여졌고 지금도 극히 당연하게 이해 및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2. 종업원예의 계몽활동

사내의사소통시스템으로서 MVC(Mizuno Video Communication)라고 하는 전사업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한 사내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30분간은 사장의 훈시, 사내전달, 1주의 사내 이벤트 등 각종 사내정보를 편집하여 방영하고, 전종업원이 보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할자 매체와 같이 간단하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과 음성에 의해서 시각과 청각으로 호소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방법은 전 종업원이 공통 체험을 가져 인식을 쉽게 공유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매주 금요일의 9시 30분에서 10시까지 30분간은 '각부 교육의 날'이라고 정한다. 1개월 4주중 첫째

금요일은 '부문장 교육의 날'로 되고 있고, 남은 3주 가운데 1주는 '인격형성 교육(자기계발)의 날'로 규정하며, 남은 2주는 각 부문마다 실정에 따라 독특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회사는 이러한 활동에 의해 윤리규범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으며, 신입사원 교육, 계층별 교육에서도 윤리규범의 강의는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勞使相生을 위한 투명·윤리경영"

청렴 위반 사례

1 공정률을 부풀려 상사에게 허위 보고

모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청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A공무원은 B업 체가 제작한 물품을 납품받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계획과 달리 B업 체의 전체 공정이 지연되어 당초 납품기한에 납품을 받지 못하게 됨. 하지만 A공무원은 공정률을 부풀려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가 장하여 상사에게 공사 진행 보고를 함

시사점 :

- ① 공정률을 부풀림으로써 마치 물품을 제때 납품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상사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이므로 A공무원의 행위는 행동강령 제4조의2(허위보고의 금지) 위반임.

제2조의2(허위보고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보고를 함에 있어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업무처리의 경과나 실적을 포함 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채용 관련 이해관계직무임에도 회피 논의 없이 처리

한국기상산업진흥원 A본부장은 2011년 1월 대학동창 B를 채용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직 팀장으로 채용하고 근거도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팀장으로 전환해 주는 특혜를 부여하였고, 2012년 3월 경력직 채용 시험에 면접위원장으로 참여하여 고교동창인 C를 1차 면접에서 불 합격되었음에도 다시 면접 기회를 부여하여 합격하도록 특혜를 줌

시사점 :

- ① 대학, 고교동창은 학연이라는 친분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채용 관련 업무에서의 회피 여부에 관하여 바로 위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생략하고 직무를 행함으로써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위반함.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바로 위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지식마당

G20 반부패행동계획 2017~2018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G20 반부패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이 채택됐다. 선언문에는 구체적으로 UN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등 주요 반부패 국제협약의 가입 및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부패공무원의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 부패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 금지, 은닉자산 회복 지원 등 표의 내용과 같으며 G20 회원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반부패 행동계획 주요 내용	
1	UN반부패협약 가입, 비준 및 완전한 이행
2	국제뇌물의 범죄화, OECD뇌물방지협약 논의 참여
3	부패공무원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 및 부패수익 세탁 방지
4	부패공무원에 대한 입국 및 피난처 제공금지에 관한 협력체제 고려
5	사법공조 등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6	해외 은닉자산 회복 지원
7	부패신고자 보호 규정 제정 및 이행, 기존의 모범사례 검토
8	부패방지지구 및 집행당국의 효과적 기능 강화 및 독립성 보장
9	공공부문의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 증진 및 부패예방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선언문을 통해 <G20 반부패행동계획 2017~2018>이 승인되었다. 따라서 이행해야 할 반부패행동계획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1. 실천적인 협력

세계화된 오늘날 국제 협력은 성공적인 부패 방지/수사/처벌 그리고 도난당한 자산의 반환에 필수적이다. ‘행동계획’은 부패방지법의 적극적인 집행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장려하고, 국내외 법 집행 기관과 관련기구 사이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부패한 공무원과 부패에 연루된 자들의 도피처를 계속해서 없애나갈 것이며,

도난당한 자산이 UN반부패협약에 따라 반환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범죄수익 관련 업무를 계속 지원하며 반부패실무그룹(ACWG)과 FATF 간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2. (실질적인) 수익소유권의 투명성

수익소유권에 대한 투명성은 부패와 불법금융을 예방하고 노출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행동계획은 수익소유권의 투명성에 관한 G20의 엄격한 원칙 아래 기업의 실질적인수익소유권을 확인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업의 실제 소유자와 관리자의 정보를 수집·확인하고 공유하면 부패한 사람들이 거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잘 지켜지지 않는 투명성에 관한 국제표준 준수가 더욱 잘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수익소유권의 정보 활용이 부패 및 관련 자금세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공공 부문의 청렴과 투명성

정부 지출은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부패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투명성은 부패를 막고 진실을 밝히는 열쇠이다. 행동계획에 따르면 G20은 공공 계약, 예산집행 과정 및 관행을 포함한 공공 부문의 투명성을 증진시킬 것이며, 정보 공개원칙을 기반으로 시민 참여, 반부패기관의 강화, 공공-민간 파트너십, 공개데이터 사용을 약속하고 있다. 공공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 충돌을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기관의 청렴과 책임 문화를 높일 수 있다.

우선 과제는 부패방지가 가능하게 조직화하고 반부패 프로그램 실천에 공공 기관이 앞장서며, 국제 청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해나가야 한다.

지식마당

또한 부패행위의 억제와 적발을 위해서는 행동이 의심스러운 경우 보고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내부고발자를 위한 입법 및 제도적 보호 장치의 실행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4. 민간 부문의 청렴과 투명성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야 한다. G20은 청렴문화증진과 중소기업 및 비금융 전문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민간주도의 반부패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을 모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부, 반부패기관, 규제당국, 법집행기구, 금융정보기관, 기업 및 시민사회 사이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장려해 나가야 한다.

5. 국제 반부패기구와의 공조

G20은 국제기구가 부패방지에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 지원하고, 기구 간 서로 공조하여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해나갈 것이다. 대표적으로 OECD 뇌물방지 실무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OECD 뇌물방지협약을 준수해나간다.

6. 부패방지 역량강화와 반부패 실천과제들

글로벌 차원에서 UN반부패협약 조항이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게 부패방지 국가의 역량강화와 효율적인 테크니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뇌물수수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게 만든다. 조달업무와 같은 특정 부문은 부패에 특히 취약할 수 있어 부패위험지수가 높을 수 있다. 고위험군의 부패위험은 국가별로 잘다뤄져야하고, 모범적인 해결사례나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G20 국가의 반부패 실천 과제는 다음과 같다.

혁신적인 솔루션과 신기술 모색, △반부패 우수 사례 공유, △국가 간 서로 학습하기, △ 국제기구와 협력, △적절한 테크니컬 지원 제공.

한편, 반부패실무그룹(ACWG)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기존 파트너 조직과의협력 및 대화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국제조직 '열린정부파트너십'(OGP)/'세계관세기구'(WCO)/'과세를 위한 정보의 투명성 및 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과 같은 새로운 대화 파트너와의 협력 및 대화이다. 또한 ACWG는 기업 및 시민사회 그리고 핵심 금융센터와의 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G20 ACWG Action Plan 2017~2018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서 리뷰] G20 반부패행동계획 2017~2018"

Quiz

- 다음중 반부패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UN반부패협약 가입, 비준 및 완전한 이행
 - 국제뇌물의 범죄화, OECD뇌물방지협약 논의 참여
 - 부패공무원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 및 부패 수익 세탁 협조
 - 해외 은닉자산 회복 지원
- 다음중 G20 국가의 반부패 실천 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혁신적인 솔루션과 신기술 모색
 - 반부패 우수 사례 공유
 - 국제기구와 협력
 - 제도 마련을 위한 제반 비용 축소
- 다음중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행동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 기업 및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력
 -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부, 반부패기관, 규제당국, 법집행기구, 금융정보기관 등과 파트너십 장려
 - 반부패실무그룹(ACWG)의 업무역량 강화
 - 민간주도의 반부패활동 지원 중단
- 다음 중 반부패실무그룹(ACWG)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 기존 파트너 조직과의 협력 및 대화를 중단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장려
 -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국제조직과 협력 및 대화
 - 기업 및 시민사회 그리고 핵심 금융센터와의 관계를 중단
 - 국제기구 한 곳에서 모든 국가의 반부패 관련 업무를 관장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 답 ③ 부패공무원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 및 부패 수익 세탁 협조
- 답 ④ 제도 마련을 위한 비용 축소
- 답 ④ 민간주도의 반부패활동 지원 중단
- 답 ②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국제조직과 협력 및 대화

관련 행사

1. 국민일보 주최 제1기 ‘반부패·청렴 교육과정’ 입학식... 공공·민간 분야 청렴문화 확산 시동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감사인 등이 한데 모여 반부패·청렴을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했다. 국민일보가 주최하고 국회사무처와 한국감사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제1기 반부패·청렴교육과정 입학식이 25일 국회 본관에서 열렸다.

반부패·청렴교육과정은 공공·민간 분야에 반부패 문화를 확산시키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운영되는 과정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감사인과 윤리경영인, 민간기업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격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부처 장·차관과 국회 상임위원장 등이 강사로 초빙돼 강연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이다.

변재운 국민일보 사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지만 국가청렴도 지수 순위는 이보다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2016년 국가청렴도 지수는 180개국 중 52위로 전년보다 15계단이나 하락했다. 지난해에도 51위에 그쳤다. 변 사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교육이 반부패와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85351&ode=11110000&cp=mv>

3. 코레일 대구본부-지역 6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청렴협의회’



코레일 대구본부가 지난 27일 대구지역 6개 공공기관이 모여 지역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한국철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의회에서는 기관별 반부패·청렴활동 우수사례 발표와 자유토의, 합동 청렴캠페인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사례 중 코레일 대구본부의 ‘이달의 행동 강령 테마’와 협력기관 소통 홈페이지 ‘청렴소담방’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의 ‘지사장이 간다’가 눈에 띄었다. 이어 진행된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에서는 ‘청렴한 레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등 기관별 특성을 살린 고객 참여형 캠페인으로 진행돼 재미와 감동을 더했다.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x=213586&part_idx=194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